

영등포구의회  
제17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9. 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32호로 2013년 8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세입항목 신설과 구 재정 운영상 불가피  
하게 필요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항목으로  
추가 신설(안 제3조10호)
- 나.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세출항목 신설(안 제4조제8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현황 : 중랑구, 구로구, 송파구, 강동구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세입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구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일반회계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주차장법 제22조에서는 징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복지비 등 주요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구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징수 여건 불안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 밖의 조항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세입항목인 이행 강제금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관 련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